

검 토 보 고 서

의 번	안 호	제104호
--------	--------	-------

2018. 10. 24.

건 명	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사회적경제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8. 10. 15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0. 15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가스사업 허가 기준 조례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기업활동을 제약하고, 조례가 운영되지 않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됨
-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"별표"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(본 조례 4조 관련)에서 사업의 종류 개정
⇒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(6개 종목) 중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(LPG차량 충전소)만 본 조례 허가기준에 반영하고 5종목은 법적기준만을 적용하여 규제 완화

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(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)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